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9월 17일, 조계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9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0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0회국회(임사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계원 의원)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한국어 교육의 핵심 기관인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효과적인 보급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5항제5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1)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관련 법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

가. 개정안 요지

-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관련 법적 지원 근거 신설(안 제19조 제5항제5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생략)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생략) <u><신설></u>	1. ~ 4. (현행과 같음) <u>5. 세종학당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인증 제도 구축·운영 지원</u>
<u>5.·6.</u> (생략)	<u>6.·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⑥ ~ ⑩ (생략)	⑥ ~ ⑩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세종학당의 확대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따른 기능 다변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또한, 세종학당재단에서 2022년도부터 한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세종한국어평가(SKA)'를 시행하고 있음.

세종한국어평가(Sejong Korean Language Assessment) 개요
주관 : 세종학당재단 목적 : 한국어 학습자의 실용적 한국어 능력 평가 대상 :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전 세계 세종학당 학습자 및 예비 학습자 등 영역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의사소통 전 영역 시험 수준 : 초급~고급 수준 평가 시험 횟수 : 매년 3회 시험 활용 : 비자 발급요건, 입학·취업 요건 등

- 세종한국어평가는 세종 학당 학습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로, 학문 목적의 범용평가를 지향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평가 목적이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그러나 세종한국어평가의 경우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 이에 개정안은 세종학당의 한국어능력평가 및 인증제도 구축에 관한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어 등의 효과적 보급과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세종학당재단이 운영 중인 세종한국어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등을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만 세종학당재단 한국어능력평가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